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6. 9(금) 10:00

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49호
- 나. 제 출 자 : 고영찬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5. 31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5. 31.

2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에서 설치·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에서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와 보건소 등 구가 설립·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(안 제12조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1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
 -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3. 6. 1. ~ 2023. 6. 7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보훈대상자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보건소 등의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혜택을 신설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구에서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와 보건소 등 구가 설립·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(안 제12조 신설)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1. 1.] [법률 제19092호, 2022. 12. 16., 일부개정]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□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[시행 2017. 6. 21.] [법률 제14459호, 2016. 12. 20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